

법 인 정 관

(2025. 4. 25.)

학교법인 김포대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재능연마를 통해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10.)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김포대학(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김포대학교(개정 2012. 7.16.)
2. 통진고등학교
3. 통진중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에 둔다.

(개정 2012. 7.16.)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7.16.)(개정 2012. 8.14.)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14. 4. 1., 2022. 6.30.)

④제3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 7.16. 2020.10.30.)

제9조의2(삭제 2012. 7.16.)

제9조의3(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예·결산보고 및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14조에 따른다.

③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조신설 2012. 7. 16.)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삭 제 (개정 2006.10.18.)

제13조 삭 제 (개정 2006.10.18)

- 제14조 삭 제 (개정 2006.10.18)
 제15조 삭 제 (개정 2006.10.18)
 제16조 삭 제 (개정 2006.10.18)
 제17조 삭 제 (개정 2006.10.18)

제 3 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 (2019.12.26.)
2. 감사 2인
3. 제1호의 이사 중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2014. 7. 8.)

제18조의2(상임이사) ①상임이사의 임기는 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상임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2014. 7. 8)

제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중임가능), 감사는 2년(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으로 한다. (개정 2013. 5.10.)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제20조의5 제3항에 의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추천자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대학평의위원회 2명, 통진고등학교운영위원회1명, 통진중학교운영위원회 1명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한다.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8.22.)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3 (개방이사의 자격)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의 구현이 가능한자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0.10.30.)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해당 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 이었던 자

4. 해당 법인의 학교의 장 이었던 자

제20조의4 (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의 경우에 개방이사의 수는 동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다.

제20조의5(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중 4인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4인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하며, 교육경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30.)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 동법 제17조 제1항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6.30.)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2. 6.30.)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개정 2022. 6.30.)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개정 2022. 6.30.)

제21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6.30.)

1. 국가공무원법의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 6.30.)

2. 사립학교법 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2. 6.30.)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사람으로서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2. 6.30.)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 6.30.)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2. 6.30.)

제21조의3(임원취임의 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학교법인의 또는 학교의 재산을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0.10.30.>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당해 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의2(행정감사) ①제25조에서 정하는 감사이외에 학교법인 이사장은 별도로 각급학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신설 2013. 9. 6)

②행정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로 구분한다.

③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1년 내지 3년의 범위 내에서 감사주기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④부분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특정업무분야 및 교직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피감사기관은 감사의 업무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행정감사반의 편성) ①제25조의2에 의한 행정감사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요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조신설 2013. 9. 6)

②감사요원은 법인사무조직 및 각급학교 소속 일반 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사무조직 및 각급학교 이외의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당해 기관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차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4(행정감사요원의 권한) 행정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조신설 2013. 9. 6)

1. 관계서류·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답변요구
3. 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계약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권한

제25조의5(행정감사결과 처리) ①감사요원은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감사요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3. 9. 6>

제25조의6(행정감사의 위임규정) 행정감사 수행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조신설 2013. 9. 6>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의2(임원의 보수지급) 이 법인의 임원중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의 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7.16.)

제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0.10.30.)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8.22.)

제29조(이사회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2022. 6.30.)

제30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8. 2. 8.)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2. 8.)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2. 8.)

④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2. 8. 2020.10.30.)

⑤제4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 회의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8.)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1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3(평의위원회의 구성) ①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5.)

1. 교수 4명
2. 직원 3명
3. 조교 1명
4. 학생 1명
5. 동문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4(평의원의 위촉) ①교내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②제31조의3 제1항5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③제31조의3 제1항6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31조의5(평의위원회의 의장 등) ①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6(평의위원회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1.)

제31조의7(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20.10.30., 2020.12.10.)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31조의8(운영규정 등) 이 정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평의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25)

제 4 장 수 의 사 업

제32조 (삭제 2013. 7.12)

제33조 (삭제 2013. 7.12)

제34조 (삭제 2013. 7.12)

제35조 (삭제 2013. 7.12)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12., 2022. 8.22.)

제36조의2(해산 시 법인의 기록물 관리) 이 법인이 해산인가, 해산명령, 폐지인가, 폐쇄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학적부 및 조직, 회계, 예산관련 자료 및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8.22.)

<조신설 2020.10.30.>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①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2013. 7.12., 2022. 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조항신설 2013. 5.10> <개정 2022. 1. 1.>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3. 7.12)

제 6 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면

제39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의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 7.12, 2019. 7.10. 2020.10.30., 2022. 8.22.)

②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이내로 하며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 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사 또는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8. 2. 8, 2019.12.26.)

③제3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년보장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7. 4.28. 2020.10.30. 2021. 9.17.)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 (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2. 부 교수 :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3. 7.12)
3. 조 교수 : 4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3. 7.12)
4. (삭제 2012. 8.14)

④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7.10.)

⑤비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9. 7.10. 2020.10.30.)

⑥대학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19. 7.10.)

⑦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0. 2020.10.30.)

⑧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조항신설 2022. 2.11.)

⑨중고등학교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조항신설 2022. 2.11.)

제39조의2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

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12)

②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③심사위원회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9조의3(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대학의 교원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9. 6)

제39조의4 (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3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12)

제39조의5(기간제 교원)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1. 교원이 제4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 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대한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10.30.)

제39조의6(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①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12. 8.14, 2013. 7.12., 2015.12.18., 2019. 7.10., 2021. 2. 5.)

1. 근무기간

가. 정년보장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강사 및 비전임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계약에 의하여 대학에서 별도로 정한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과구조개편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강사 등의 임용·재임용 및 그에 따른 절차와 별도로 적용

할 절차,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의7(교사의 신규채용 및 전형결과 공개)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 방법 및 절차 등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12.)

- ②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9조의8(교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의 장 및 비전임교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 7.12, 2019. 7.10.)

- ②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고등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36조의 명예퇴직 규정을 준용하며 대학 교원의 명예퇴직은 대학의 “교원명예퇴직규정”을 따른다.(개정 2018.12.21. 2021. 9.17.)

제2관 신 분 보 장

제40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2013. 5.10. 2016.11.25. 2020.10.30., 2021. 2. 5.)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22. 8.22.)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0.10.30.)

③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10.30.)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 7. 8., 2016.11.25., 2021. 2. 5.)

1. 제4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2. 6.30.)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40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5)

제44조(직위해제) ①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2020.10.30.)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개정 2016.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③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개정 2016.11.25. 2021. 3.31.)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연봉제의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

지 못할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연봉제의 경우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20.10.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⑥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⑦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게 어렵거나, 학교의 공정성과 학생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택에서 대기(자택대기) 하도록 인사명령 할 수 있다.(조항신설 2022. 6.30.)

제44조의2(당연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44조의3(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幫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 ②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5.]

제45조(보수) ①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교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폐과)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과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21.)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 8.22.)

제46조의2(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4(윤리규범) 당해 중·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의 윤리규범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조신설 2013. 5.10)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0.31.)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 6.30.)

2.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10.)
3.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9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인(교감, 교무부장)과 교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천한 자 5인을 합하여 총 7인의 교원(학교장 제외)을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조직한다. (개정 2013. 5.10. 2019.12.26.)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의 경우에는 총장이 임명한 교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이 된다. (개정 2012. 7.16. 2019.12.26. 2022. 6.30. 2025. 4.25.)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①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8.30., 2022. 3.25.)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 8.30., 2022. 3.25.)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5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당해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7.12, 2019.12.26. 2020.10.30.)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17. 4.28, 2018.12.21. 2021. 9.17.)

③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신설 2022. 2.11.)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17. 4.28, 2018.12.21. 2020. 2.21. 2021. 9.17.)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17. 4.28, 2018.12.21. 2021. 9.17.)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개정 2017. 4.28, 2018.12.21. 2021. 9.17.)

제55조의3(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조신설 2016. 8.30.>

②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조신설 2016. 8.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5조의4(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0. 2.21.)

1.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5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55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5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⑤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제60조의2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제척사유)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2(위원의 기피)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①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정기준 등에 따른다.(개정 2019.12.26.)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9. 7.10. 2022. 6.30.)

③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10.)

④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10.)

⑤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신설 2022. 2.11.)

제60조의2(징계의결의 재심)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조신설 2019. 7.10. 개정 2022. 3.25.)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대학의 경우 같은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조신설 2019. 7.10.개정 2022. 3.25.)

③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2. 3.25.)

④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 3.25.)

⑤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3.25.)

⑥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58조·제59조 및 제60조제1항·제3항

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신설 2022. 3.25.)

제61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5.10, 2016.11.25, 2018. 7. 1.)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2020.10.30.)

제62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8.22.)

제6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2. 8.22.)

제3절 삭 제 (개정 91. 9.)

제64조 삭 제 (개정 91. 9.)

제65조 삭 제 (개정 91. 9.)

제66조 삭 제 (개정 91. 9.)

제67조 삭 제 (개정 91. 9.)

제68조 삭 제 (개정 91. 9.)

제69조 삭 제 (개정 91. 9.)

제70조 삭 제 (개정 91. 9.)

제71조 삭 제 (개정 91. 9.)

제72조 삭 제 (개정 91. 9.)

제73조 삭 제 (개정 91. 9.)

제74조 삭 제 (개정 91. 9.)

제75조 삭 제 (개정 91. 9.)

제76조 삭 제 (개정 91. 9.)

제77조 삭 제 (개정 91. 9.)

제4절 사무직원

제78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2013.11.20. 개정)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9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보직,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고등학교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고, 근속승진제 운영,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 공로연수제 운영,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12. 7. 16, 2018.12.21., 2019. 7.10. 2022. 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22. 2.11.)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이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조항신설 2021. 9.17.)

제80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단, 중·고등학교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

한다. (개정 2012. 7. 16.)

제81조(보수) ①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단, 중·고등학교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 7.16.)

②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2.11. 5.)

제82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단, 중·고등학교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 7.16.)

제83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제79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 3.25.)

②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3.25.)

③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2. 3.25.)

제83조의2(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법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대학교의 경우 제79조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3항

및 제60조의2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3.25.>

제 7 장 직 제

제1절 법 인

- 제84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일반직원(계약제직원 포함)으로 보한다.(개정 2013. 5.10., 2022. 8.22.)
- ②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소속 직원이 법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단 소속 학교의 장의 제청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3.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3.31.)

제1절의 2 대학

제84조의2(총장 등) ①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0.12.10.)

③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한다. 단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0.30., 2020.12.10. 2022. 6.30.)

제84조의3(하부조직) ①대학에 하부조직을 두며, 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②각 조직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계약제직원 포함)으로 보한다.(개정 2014. 7. 8., 2020.10.30., 2021.12.27.)

제84조의4(부속시설) ①대학에는 필요한 부속 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계약제직원 포함)으로 보한다.(개정 2012. 8.14. 2020.10.30., 2022. 2. 8.)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원(계약제직원 포함)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0.30., 2022. 2. 8.)

제84조의5 삭제

제2절 고등학교

제85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명과 교감 1명을 둔다.(개정 2020.12.10.)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0.12.10.)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한다.

제86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5급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16.)

제3절 중 학교

제87조(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명과 교감 1명을 둔다.(개정 2020.12.10.)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0.12.10.)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한다.

제88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6급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16.)

제4절 정 원

제89조(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90조(목적) 이 8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1조(위원회 설치 범위)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92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5.10.)

②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93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5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9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학부모위원회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9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9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 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전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01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안전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전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2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3조(안전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전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04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5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안전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108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9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 7.12)

제111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 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3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4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6조 (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8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9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20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자격상실 기타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시행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122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한다.

제12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4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년)	주 소
이사장	최종호	02. 1. 1	53. 1.19-63. 1.17	김포군 대곶면
이사	서임수	04. 7.19	63. 1.18-66. 2. 1	서울시
이사	이광훈	21. 7. 3	64. 1. 8-68. 1. 7	서울시
이사	박태희	14. 5.31	64. 1. 8-68. 1. 7	서울시
이사	박홍근	10. 7. 8	62. 1. 8-71. 1. 3	서울시
이사	남궁철	16. 8. 4	64. 1. 8-68. 1. 7	서울시
이사	김춘원		53. 4. 7-53.12.31	하성면 서암리
감사	홍순철		63. 1.18-67. 7.17	통진면 마송리
감사	임용복		63. 1.18-65. 8.17	통진면 마송리

제125조(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을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25. 개정 2022.10.21.>

제126조(삭제 2022.10.21.)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9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이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4조 내지 제77조, 제83조의 규정은 1994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96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각 급 학교(전문대학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97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39조 제2항의 제1호는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임용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 ③(적용시한) 제39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별표2>의 전문대학, 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김포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하여 “김포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내용

개정일자 : 2000. 04. 27

제6장 교직원

39조의 1(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④중. 고등학교 교직원의 정년, 명예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36조, 제47조, 사립학교법 제 60조의3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0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0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0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0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김포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하여 “김포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는 이
사는 5년 감사는 3년 재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수 8년 임용기간 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수 8년에 해당하
는 자의 임용기간은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 자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사의 임용기간의 적용시한) 이 규정 제39조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기준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5조의2제3항 및 제55조의4는 2020. 2.2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 제1호의 이사정수 적용은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의3의 평의회 구성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4조제3항의 직위해제된 사람의 봉급지급은 이 규정의 개정시행일 이후 직위해제사유 발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정관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7조 제2항은 2022. 1. 1.부터 시행하고, 제39조 제8항·제9항, 제55조의2 제2항·제3항, 제60조 제6항 및 제79조 제1항·제2항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5조 제2항 제2호 마목, 제3항 제1·2·4·5호, 제60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125조 및 제126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이 정관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이 정관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9조의 별표2 대학 일반직원 정원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개정 2012. 7. 16.)

총 계	6 명
일 반 직 계	4 명
5 급	1 명
6 급	1 명
8 급	2 명
기 능 직 계	2 명
8 급	1 명
9 급	1 명

<별 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개정 2022. 8.22.)

총 계	50 명
일 반 직 계	50 명
5 급	1 명
가 군 6 급	5 명
7 급	1 명
나 군	43 명

<별 표 2>

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개정 2018.12.21)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인원수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5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6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7급	1명
행정직군 소계				3명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9급	2명
관리운영직군 소계				2명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9급	2명
기술직군 소계				2명
일반직 합계				7명

중학교 일반직원 정원(개정 2018.12.21)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인원수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6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7급	1명
행정직군 소계				2명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9급	2명
관리운영직군 소계				2명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9급	2명
기술직군 소계				2명
일반직 합계				6명